

##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,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를 활용해 보세요.

-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를 위한 디폴트옵션 꿀팁-

□ 정부는 가입자의 퇴직연금이 ‘낮은 금리의 유휴자금’으로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를 도입\*하였습니다.

\* '22.7.12. 최초 도입,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'23.7.12. 전면 시행

○ 이에 가입자들이 디폴트옵션을 쉽게 이해하고 운용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꼭 알아야 할 연금 꿀팁을 안내해 드립니다.



(디폴트옵션이란?) DC 또는 IRP 가입자가 바쁜 일상 등으로 적립금 운용 지시를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‘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(정부심의를 거쳐 승인)’으로 금융회사가 **적립금을 자동 운용**해주는 서비스

### 가입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디폴트옵션 핵심포인트

1

· DC·IRP 가입자는 디폴트옵션을 꼭 지정하세요.

2

· 본인의 위험성향을 고려하여 디폴트옵션 상품을 지정하세요.

3

· 디폴트옵션을 지정하더라도 당장 운용상품이 변경되지는 않아요.

4

· 운용지시 지연이 없는 경우에도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할 수 있어요.

5

· 기존 원리금보장상품(예금 등) 자동 재예치 제도는 폐지되니,  
그 전에 본인이 직접 운용지시를 하거나 사전에 디폴트옵션을 지정하세요.

6

· 디폴트옵션 공시 수익률을 비교하여 좋은 상품을 고르세요.

## 1 DC, IRP 가입자는 디폴트옵션을 꼭 지정하세요.

◇ 디폴트옵션은 DC, IRP 가입자에만 적용됩니다.

□ 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(DB), 확정기여형(DC) 및 개인형 퇴직연금(IRP)으로 나뉘며, 디폴트옵션은 ‘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DC, IRP’에만 적용되고 DB제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
- 따라서, DC 또는 IRP 가입자는 미리 디폴트옵션을 지정하여 “운용지시를 하기 어려운 상황 등에 미리 대비”하시기 바랍니다.

### 퇴직연금제도별 디폴트옵션 지정의무



## 2 본인의 위험성향을 고려하여 디폴트옵션 상품을 지정하세요.

◇ 투자위험, 목표를 고려하여 디폴트옵션 상품을 지정하세요.

□ 디폴트옵션의 운용대상 상품은 투자위험에 따라 4가지 위험그룹 (초저·저·중·고위험)으로 나뉘며, 그룹별로 구성 상품이 다르므로 본인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지정하세요.

### ※ 디폴트옵션 상품<sup>주)</sup>의 위험도에 따른 분류(예시)

| 위험 그룹   | 구성 상품                   | 목표 고객층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초저위험 상품 | · 정기예금 또는 보험사 GIC 100%  | · 원금 보존 중시         |
| 저위험 상품  | · 펀드 40% + 정기예금·GIC 60% | · 투자 손실 민감         |
| 중위험 상품  | · 펀드 70% + 정기예금·GIC 30% | · 우수한 장기 성과 중시     |
| 고위험 상품  | · 펀드 100%               | · 높은 수익률 추구, 장기 투자 |

주) 원리금보장형 상품(정기예금, 보험사 GIC[이율보증형 보험] 등), 펀드, 이들이 혼합된 포트폴리오 형태가 있으며, 투자위험성에 따라 구성 상품의 비중이 상이

### 3

#### 디폴트옵션을 지정하더라도 당장 운용상품이 변경되지는 않아요.

- ◇ 디폴트옵션은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가입자가 **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고 6주의 대기기간\***이 경과하는 경우 적용됩니다.

\* (기존 가입자) 상품의 만기 도래 후 4주 내 운용지시 없으면 금융회사가 디폴트 옵션 적용 사전 통지 → 통지 후 2주 내 운용지시 없으면 적용

- 디폴트옵션은 DC, IRP 가입자가 “운용지시를 하기 어려운 상황 등에 대비하여 **운용할 상품을 사전에 지정**”하는 것입니다.

- 따라서, 기존에 운용하고 있던 상품이 있는 가입자는 디폴트옵션 지정과 무관하게 **기존의 상품으로 계속 운용**되며,
- **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**했음에도 **운용지시가 없는 경우** 등에 한하여 일정 기간(6주) 대기 후 **디폴트옵션 상품**으로 운용됩니다.



**(잠깐 !)** 디폴트옵션은 만기가 있는 금융상품에만 적용됩니다.

퇴직연금 가입자 A는 2천만원은 원리금보장상품으로, 3천만원은 펀드로 운용

⇒ 만기가 있는 원리금보장상품 2천만원의 적립금에 대해서만 만기 후 6주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디폴트옵션이 적용(만기가 없는 펀드는 디폴트옵션 미적용)

### 4

#### 운용지시 지연이 없는 경우에도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할 수 있어요.

- ◇ 가입자가 직접 디폴트옵션 상품 운용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.

- 가입자는 희망할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을 6주간의 대기기간 없이 바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.

- 따라서, DC 가입자의 소속 직장에서 규약이 변경되지 않아\* 디폴트옵션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, 가입자는 **직접 지시를 통해 적립금을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**할 수 있습니다.

\* DC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은 근로자 대표의 동의 등을 거쳐 규약에 디폴트옵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해야 함(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§21조의2 ⑤)

---

◇ 가입자는 언제든지 디폴트옵션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변경할 수도 있어요.

---

□ 가입자가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더라도, **언제든 일반상품으로 변경**할 수 있습니다.

## 5 원리금보장상품 자동재예치는 폐지되니 유의하세요.

---

◇ 2023.7.12.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더 이상 동일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되지 않으므로, 반드시 별도 운용지시를 하거나 디폴트옵션을 지정하세요.

---

□ 디폴트옵션의 본격 시행에 따라 2023.7.12. 이후 **원리금보장상품 자동재예치 제도는 폐지**됩니다.



**(참고!)** 원리금보장상품 자동재예치 폐지 이유 (고용노동부 FAQ '22.7.5.)

디폴트옵션이 도입됨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던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을 경우 「근퇴법」상 규정하고 있는 디폴트옵션 절차가 법률상 의무로 진행되며, 기존 자동재예치 제도는 폐지

□ 이에, 가입자가 만기 도래하는 원리금보장 상품에 대해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디폴트옵션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만기 도래 자금은 대기성 자금\*으로 운용되며

\* 대기성 자금이란, 보험계약은 금리연동형 보험, 신탁계약은 대기자금 운용을 위해 자산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운용방법을 의미

○ 대기성 자금으로 계속 운용될 경우 가입자의 운용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, 가입자는 만기도래자금에 대해 **별도 운용지시**를 하거나 **사전에 꼭 디폴트옵션을 지정**하시기 바랍니다.

**디폴트옵션 공시 수익률을 비교하여 좋은 상품을 고르세요**

◇ 금융회사별 디폴트옵션 상품의 **운용실적**이 **공시**되고 있으므로,  
이를 비교하여 **더 좋은 상품**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□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가입자들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돕고자 홈페이지를 통해 디폴트옵션 상품의 **운용실적**(가입 규모, 수익률 등)을 공시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※ 고용노동부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화면(예시)

[illegible]

## 금융감독원( www.fss.or.kr-통합연금포털)

### 금융소비자보호

금융소비자보호

생생·힘껏 금융생활을 만수무اعة

서민금융1332

**통합연금포털**

- 통합연금포털
- 내 연금조회·재무설계
- 연금자료 비교분석**
  - 연금지속 비교분석
  - 퇴직연금 비교분석
  - 원리금보장 연금자료
  - 사전지정운용방법(디플트옵션) 비교분석**
- 연금지속 안내
- 퇴직연금 안내
- 연금세제 안내
- 연금 자료실
- 공지사항
- 통합연금무담보그린
- OpenAPI
- 통합연금정보 개선제안

### 사전지정운용방법(디플트옵션) 비교공시

**개요**

사전지정운용방법(디플트 옵션)의 상품명 정보입니다.

**▶ 상품명 수익률+수수료율**

| 연역   | 전제 | 연형 | 금융투자 | 생원보험 | 손해보험 | 기타 |
|------|----|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|
| 원금보장 | 전제 |    |      | 금융회사 | 전제   |    |
| 위험도  | 전제 | 연도 | 2023 | 분기   | 1분기  |    |

◇ 작성기준일 : '23.1분기

■ 전제 : 135건 ( 1/14페이지 )

(단위 : 원, %)

| 상품명                | 확정연금<br>사망자 | 원금보장<br>여부 | 상품유형   | 위험도 | 적립금액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수익률  |      |      |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     | DC          | IRP         | 합계            | 1M   | 3M   | 6M   | 1Y   |
| 디플트옵션 고위험 BF1      | 중           | 비보장        | 장할투자증권 | 고위험 | 238,190,606 | 360,419,351 | 598,609,957   | 1.37 | 1.98 | 0.00 | 0.00 |
| 디플트옵션 고위험 포트폴리오 1호 | 중           | 비보장        | 포트폴리오  | 고위험 | 38,217,094  | 109,954,530 | 148,171,624   | 0.72 | 3.80 | 0.90 | 0.00 |
| 디플트옵션 중위험 포트폴리오2   | 중           | 비보장        | 포트폴리오  | 중위험 | 798,263,198 | 417,288,141 | 1,215,551,339 | 1.33 | 2.10 | 0.00 | 0.00 |

※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국민에게 유익한 연금정보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.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“파인”(FINE)을 통해 더 많은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<br>(고용노동부) | 근로기준정책관<br>퇴직연금복지과 | 책임자 | 과 장 | 손재형 (044-202-7554)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남성옥 (044-202-7557) |
| 담당 부서<br>(금융감독원) | 연금감독실<br>연금감독팀     | 책임자 | 실 장 | 이창운 (02-3145-5180)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팀 장 | 최은식 (02-3145-5190) |

| 퇴직연금사업자 | 대표 문의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경남은행    | ☎ 1600-858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광주은행    | ☎ 1600-4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국민은행    | ☎ 1599-009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업은행    | ☎ 1566-256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농협은행    | ☎ 1588-599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대구은행    | ☎ 1588-50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부산은행    | ☎ 1588-6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산업은행    | ☎ 1588-21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신한은행    | ☎ 1577-41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우리은행    | ☎ 1533-13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하나은행    | ☎ 1599-20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KB증권    | ☎ 1600-55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NH투자증권  | ☎ 1544-60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대신증권    | ☎ 02-769-3400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미래에셋증권  | ☎ 1588-557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삼성증권    | ☎ 1644-5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신영증권    | ☎ 1588-858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신한투자증권  | ☎ 1588-11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유안타증권   | ☎ 1588-26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하나증권    | ☎ 1588-31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하이투자증권  | ☎ 02-2122-9040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한국투자증권  | ☎ 1588-88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한국포스증권  | ☎ 1644-17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한화투자증권  | ☎ 02-3772-7600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현대차증권   | ☎ 02-3787-2053(DC)<br>02-3787-2641(IRP) |
| DB생명    | ☎ 1588-554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IBK연금보험 | ☎ 02-2270-1580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교보생명    | ☎ 1588-077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동양생명    | ☎ 02-728-9188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미래에셋생명  | ☎ 02-2287-4080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삼성생명    | ☎ 1588-31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신한라이프생명 | ☎ 02-3455-4704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푸본현대생명  | ☎ 02-3284-7171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한화생명    | ☎ 1588-630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흥국생명    | ☎ 1811-07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DB손해보험  | ☎ 1588-7937<br>☎ 02-3011-5747           |
| KB손해보험  | ☎ 1544-95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롯데손해보험  | ☎ 1599-88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삼성화재    | ☎ 1899-300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현대해상    | ☎ 1588-565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